문화관광체육과

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: 2026. 11. .
제 출 자: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영종구립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합창단의 설치(안 제1조 ~ 제2조)
나. 합창단의 기능 및 구성(안 제3조 ~ 제4조)
다. 단원등의 임무 및 위촉(안 제5조 ~ 제6조)
라. 단원등의 위촉 해제(안 제7조)
마. 운영자문 및 공연(안 제8조 ~ 제9조)
바. 경비의 지원 및 운영의 위탁(안 제10조 ~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별첨
다. 입법예고 : 8.19.~9.7, 의견수렴 결과 일부 반영
라. 기 타
- 규제사전심사: 대상 아님(비규제사항)
-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종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영종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합창단을 설치·운영한다.

1.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(이하 “합창단”이라 한다)
2.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소년소녀합창단(이하 “소년소녀합창단”이라 한다)

제3조(기능) 각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・예술의 진흥
2.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
3.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구민화합 기여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활동

제4조(구성 등) ① 각 합창단은 단장, 지휘자, 반주자 및 성악코치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구청장이 된다.

③ 각 합창단의 단원은 50명 이내로 한다.

제5조(임무) ① 단장은 각 합창단을 대표하여 지휘자·반주자·성악코치·단원

(이하 “단원등”이라 한다)을 지휘·감독하고 각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반주자, 성악코치 및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, 공연연습과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.

제6조(단원등의 위촉) ① 지휘자, 반주자, 성악코치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② 합창단 단원은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영종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중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③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8세 이상 19세 이하로서 영종구에 주소를 두거나 영종구 소재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중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구청장이 위촉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위촉 해제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위촉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단원등의 위촉 해제) ① 구청장은 단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와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

2. 단원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

3.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

4. 각 합창단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5.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

6.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등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이 제6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위촉기간 동안 단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자문) 구청장은 각 합창단의 조직·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공연) ① 각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각 합창단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공연할 수 있다.

③ 각 합창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구민을 위한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10조(경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각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각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, 반주자 및 성악코치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

로 정한다.

제11조(운영의 위탁) 구청장은 각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단원등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